

國務調整室
政策調整事例 第3輯

政策調整事例 綜合

- 2000. 1월부터 2001. 8월까지 -

2001. 9



國務調整室

國務調整室
政策調整事例 第3輯

政策調整事例 綜合

-2000.1월부터 2001.8월까지-

2001. 9

國務調整室

目 次

I.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機能

1. 국무조정실의 기능	7
2. 정부정책의 중요성	8
3.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유형	9
4. 정책조정사례집 발간	11

II. 政策調整事例 綜合

□ 總括調整官室

○ 의학전공자에 대한 「전문연구요원」 제도 확대	17
○ 노점상 단속업무 주무부처 조정	18
○ 난지도 폐기물처리시설 이전관련 보상문제	19

<주무차관회의 관리과제>

○ 재래시장 육성대책	20
○ 인사정책 추진관련 조정	21
○ 바이오기술·산업위원회 구성	23
○ 영월댐 관련 주민지원대책	24
○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 개선	25
○ 모성보호 관련3법 개정	26
○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	28
○ 경부고속철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	29
○ 건축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	30
○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관련	31
○ 용담댐 용수배분 문제관련	33
○ IT업무 영역조정	35
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관련 36
- 사회복지공무원 수당지급 38
- IT 벤처기업거래소 설립추진 39
- 동영상(MPEG) 관련 민관합동 대응체제 구축 40
- IT인력양성 총괄체제 구축관련 41
- 지방공기업 운영개선 42

□ 經濟調整官室

- FIU 정보통보기관 범위 관련 45
-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정관련 46
- 전자상거래 업무영역 조정 47
- 채광·채석관련 산림훼손 방지대책 48
- 디지털컨텐츠 식별체제 개발 추진체제 조정 50
-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관련 조정 52
-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국내이행체제 구축조정 54
- 광주지역 광산업 지원 연구기관 설립조정 56
- 부당경쟁방지법 개정관련 이견조정 57
- 부품·소재특별법 제정관련 조정 59
- 정보통신설비의 설계·감리제도 조정 61
- 마포 석유비축기지 이전 조정 62
- 「신기술 활용증진 정책협의회」 구성·운영 63
- 국제해상여객항로 개설관련 64
- 불량 수입농수산물 근절대책 추진 65
- 경부고속도로 교량균열발생 관련 66
- 인천국제공항 관련 조정 67
-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관련 68
- 국가지리정보체계법 시행령 제정관련 조정 69
-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개선관련 조정 70

- 위성위치정보보정시스템(DGPS) 공동활용 추진 71
- 논농업 직불제 도입추진 72

□ 社會文化調整官室

- 사회복지공무원 수당지급 조정 75
- 아·태 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정관련 76
- 노숙자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화 방안 77
- 어린이 보호·육성 종합대책 수립 78
-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관련 79
- 3D·IT 업종 인력부족 해소관련 81
-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 협의조정 82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정관련 83
- 중학교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교원봉급 관련 84
-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85
-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관련 86
- 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00 지원관련 87
- 건전해외여행 추진대책 관련 88

□ 水質改善企劃團

- 금강·영산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91
-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 93
- 영월댐 건설관련 추진여부 조정 94
- 분뇨·축산폐수 해양배출기준 설정관련 96
-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양여금 재원조달 관련 97
- 새만금사업 정부조치계획 확정 99

□ 安全管理改善企劃團

- 개발계획 수립시 방재개념 도입 제도화 103
- 신공항고속도로 운행 시내버스 입석운행 금지 105
- 이륜자동차 전조등 자동등화제도 도입 106
- 고속도로 운행 시내버스 좌석안전띠 설치의무화 107
- 구난·구조 인력확충을 위한 의무소방대 설치 109
- 88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110
- 자동차 운행기록계 등 사후관리 제도화 111
- 봄철 산불 방지대책 추진 113
- 가로등 감전사고 대책수립 114
- 지진 방재대책 추진강화 115

I .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機能

1. 國務調整室의 機能

- 국무조정실은 73년2월1일 차관급 기관인 「行政調整室」로 설립되었으며, 98년2월28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長官級 기관인 「國務調整室」로 개편
 - 국무조정실의 각부처 업무에 대한 정책조정기능과 심사평가기능이 강화되었으며, 규제개혁기능이 신설됨

-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指揮·監督, 政策의 調整, 審査評價 및 規制에 관하여 國務總理를 補佐하는 임무를 수행 (정부조직법 제20조)

◇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기능, 심사평가기능, 규제개혁기능중 政策調整機能에 焦點을 맞추어 정책조정사례 제3집을 발간

2. 政府政策 調整의 重要性

- 정부의 主要政策은 관계부처 협의, 민간의견 수렴 등 多樣한 節次를 거쳐 決定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部處가 독자적으로 政策을 추진하는 경우는 매우 거의 없음

 - 정책추진과정에서 부처들은 각자 多樣한 公益을 대변하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은 곧 협의과정이며, 이것이 民主主義式 意思決定過程의 핵심임

 - 이러한 과정에서 部處間 意見對立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, 특히 행정의 專門性이 깊어지고 行政環境이 複雜·多岐化 해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임
- ⇒ ① 정부정책을 부처차원이 아닌 國家次元에서 다양한 공익을 均衡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잡아주고
- ② 부처간 이견대립이 장기화되어 政策이 失機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의 調整機能은 무엇보다 중요

3.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 類型

(1) 각종 委員會를 통한 政策調整

□ 각종 위원회는 국정 의 많은 분야중 力點的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서, 關係部處가 많고 中·長期的으로 對應하거나 상황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, 목적이 달성 되면 廢止됨

- 國務總理가 委員長인 위원회 : 총31개
- 國務調整室長이 委員長인 위원회 : 12개

□ 委員會를 통한 調整事例

▲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

- 영월댐건설 백지화 결정(2000.6)
- 새만금사업 추진방향 결정(2001.5)

▲ 국제행사심사위원회(위원장 : 국무조정실장)

-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계획 등 심사(2001.6)

(2) 次官會議를 통한 조정

□ 통상적으로 매주 1회씩 개최되는 차관회의는 國務會議의 前審機構로서 부처간 쟁점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·조정하는 기능을 수행

□ 次官會議를 통한 調整事例

▲ 개방형 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안(2000.2)

- 상위직급 결원발생시 개방형 직위 우선충원

▲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(2000.6)

- 중복투자 방지장치 마련 등

(3) 主務次官會議를 통한 調整

- 主務次官會議에서는 정책을 직접 조정하기보다는 국무조정실과 주무부처의 조정기능을 통해 政策調整課題를 發掘하고 조정 推進 狀況을 點檢·督勵

- 主務次官會議를 통한 調整事例
 - ▲ 사회복지공무원 수당지급(2001.8, 국무조정실)
 - ▲ IT벤처기업 거래소 설립관련(2001.8, 재경부)
 - ▲ IT인력양성 총괄체제 구축관련(2001.8, 교육부)
 - ▲ 지방공기업 경영개선(2001.8, 행자부)

(4) 各部處의 要求에 의한 調整

- 각부처는 업무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와 協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, 長期化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
 - 관계부처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課長級 會議·局長級會議·1級會議, 關係次官會議, 關係長官會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기능 수행

- 部處의 要求에 의한 調整事例
 - ▲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정관련(2001.8, 재경부 요구)
 - ▲ 마포 석유비축기지 이전 조정(2000.2, 산자부 요구)
 - ▲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개선관련 조정(2000.5, 경기도 요구)

(5) 國務調整室의 主導的인 調整

- 국무조정실은 國務總理 指示사항,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政策懸案, 여러부처가 관련되어 한 부처의 주도적 추진이 어려운 과제, 長期的으로 對備할 과제 등에 대한 조정필요사항을 발굴·조정
- 國務調整室의 主導한 調整事例
 - ▲ 국립공원 청소년 입장료 면제(2001.7, 국무총리 지시)
 - ▲ 채광·채석관련 산림훼손 방지대책(2000.7, 사회적 이슈)
 - ▲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관련 조정(2000.8, 관계부처 이견)
 - ▲ 금강·영산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(2000.10, 장기대비과제)

4. 政策調整事例輯 發刊

- 이번에 발간한 政策調整事例는 지난 제1집(98.3~99.8), 제2집(99.9~2000.5)에 이어 2000년 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한 정책조정사례중
 - 비교적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, 조정사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한 것이며
 - 審査評價機能이나 規制改革機能은 심사평가보고회나 규제심사를 통해 독특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내용에서 除外하였음
- 앞으로도 매년 이러한 政策調整事例輯을 발간하여 국무조정실의 政策調整機能 向上을 도모하고, 國務調整室의 調整機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음

II. 國 務 調 整 事 例 綜 合

總 括 調 整 官 室

經 濟 調 整 官 室

社 會 文 化 調 整 官 室

水 質 改 善 企 劃 團

安 全 管 理 改 善 企 劃 團

□ 總括調整官室 □

醫學專攻者에 대한 「專門研究要員」制度 擴大

□ 調整背景

- 군대체복무(병역특례)제도의 일종인 「전문연구요원」 제도에 의학전공자는 제외되어 의학계 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
- 21세기 유망산업인 생명공학(BT) 분야 육성을 위해서는 의학전공 우수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의학전공자에 대해 「전문연구요원」(병역특례) 제도확대 필요

□ 異見內容

- 과기부, 복지부 등은 생명공학 분야 육성과 기초의학연구 발전을 위해 의학전공자에 대한 군대체복무제도의 확대 주장
- 국방부,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제도 확대는 병역자원 우선 확보를 위한 군대체복무제도의 단계적 축소방침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타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

□ 調整結果(2001.8.17,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)

- 의학전공자에 대하여도 전문연구요원제도 확대 적용
 - 다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학전공자의 석사과정 에 대한 징집연기 연령을 상향 조정 (현행 27세→28세)
- 제도시행을 위해 관계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 조속 추진

□ 調整效果

- 의학전공 우수연구인력의 생명공학(BT) 분야 진출확대 및 기초의학연구 활성화 기대

露店商 團束業務 主務部處 調整

□ 調整背景

- 감사원에서 2001.1.31~2.22 생활주변 불법무질서 지도단속 실태 감사결과, 노점상관련 문제점을 통보코자 하는 과정에서 건교부, 행자부간에 주무부처 논란이 제기되어 조정요청

□ 異見內容

- 노점상 단속업무 주무부처 논란과 관련
 - 건설교통부에서는, 도로교통법을 주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이 있는 행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
 - 행정자치부에서는, 도로법을 주관하고 있고 도로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권한과 도로관리조직을 가지고 있는 건교부가 노점상 단속의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

□ 調整結果(2001.3.19, 총괄조정관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)

- 불법노점상 단속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권한을 부여받은 도로관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
- 도로법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조정

□ 調整效果

- 불법노점상 단속에 관한 주무부처 논란 제거 및 책임있는 노점상 단속 정책 추진에 기여

난지도 廢棄物處理施設 移轉 關聯 補償問題

□ 調整背景

- 서울시 상암동(난지도)에 있는 환경부 폐가전제품 처리시설 부지가 월드컵 『평화의 공원』 부지로 결정('99.6) 되어 동 시설 이전을 추진하던 중 보상문제로 환경부와 서울시간 마찰

□ 異見內容

- 환경부는 동 부지내 기계시설은 민간에 매각하되, 나머지 시설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금액 2,006백만원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보상해줄 것을 요구
- 서울시는 환경부가 서울시의 행정재산인 동 부지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·허가를 받아 사용중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, 환경부는 서울시에게 손실보상이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,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

□ 調整結果(2001.5.15, 일반행정심의관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)

- 서울시의 동 부지에 대한 사용연장허가 취소는 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, 환경부의 손실보상요구는 법적 논리가 미약하고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환경부에서 보상요구 철회

□ 調整效果

- 폐가전처리시설은 평화의 공원 부지에서 이전하여 국가적 사업인 월드컵 「평화의 공원」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하였음

在來市場 育成對策

□ 調整背景

- 민주당에서 의원입법 추진중인 「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개정안 중 재래시장 재개발·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례조치*에 대해 관계부처 이견

* 산자부·중기청 : ① 재래시장 재개발시 도시계획수립(변경)절차 간소화
②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토록 용적율 상향조정

* 건교부 : 반대 입장

□ 調整結果 : 부처협의 및 당정협의에서 조정

- 01.4 당정협의 : 재래시장 재개발·재건축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건교부가 대안을 마련하여 실무당정협의 추진기로 합의
- 건교부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실무협의

- 01.5 당정협의 : 부처간·당정간 주요쟁점에 대해 합의

① 주상복합건물 허용 등에 대한 도시계획절차 배제

- 용도지역변경 등 도시계획변경은 시·군·구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(중기청안 반영 : 건교부안은 중기청장이 도시계획변경을 요구)
- 시·군 및 시·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외의 도시계획절차를 조례 위임없이 생략 (건교부안 일부수정 : 당초 건교부안은 조례에 위임)

② 재개발·재건축 추진시장에 대해 용적율 상향조정

- 시장 재개발·재건축시 용적율은 준주거지역 수준(700%)에서 조례로 결정 (건교부안 반영)

人事政策 推進關聯

□ 調整背景

- 최근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진중인 몇가지 인사개혁사안이 사전 협의 없이 보도되고 현실성 부족 등을 이유로 행자부가 이견 제시
 - 국가고시 개편, 계급제 폐지근거 신설, 시간제공무원제 도입, 성과상여금 제도, 인사전담부서 설치 등

□ 主要 爭點

- 고시제도 개편 : 공직적격성 평가(PSAT) 도입시 헌법·국사 등 기존 시험과목을 별도의 직무소양평가로 존치할지 여부
- 계급제 폐지 : 01.7월부터 외무공무원의 계급제 폐지에 따라 이를 일반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반영할지 여부
- 시간제공무원제 : 전문성과 능력이 뛰어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제공무원 임용근거를 국가공무원법에 신설할지 여부
- 성과상여금제도 : 개선방안 마련시 공직사회에 경쟁원리 도입을 위한 원취지를 살릴 것인지, 부처별·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지 여부
- 인사전담부서 설치 : 총무과의 인사기능을 분리하여 인사 행정담당관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우선 설치대상기관 (19개)에 대해 전면적으로 추진할지 여부

□ 調整結果

-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행정자치부·중앙인사위원회간 이견사항에 대해 협의·조정 완료(2001.5.9)
 - 고시제도 개편 : 헌법·국사 등 기존 시험과목을 별도의 직무소양평가로 존치하지 않되, 기본적인 직무소양이 평가될 수 있도록 헌법과 국사에서 일정부분을 출제
 - 계급제 폐지 :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도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고 계급제에 익숙한 공무원사회에 파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근거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반영하지 않음
 - 시간제 공무원제 :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제 공무원제 임용근거를 두되, 시행령에서 계약직공무원부터 시행토록 규정
 - 성과상여금제도 : 중앙인사위에서 실태조사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2001.6월말까지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
 - 인사전담부서 설치 : 총무과의 인사기능을 분리한 인사전담기관을 가급적 많은 부처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적극 협조
- 앞으로도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간 정기·수시 「인사정책 실무협의회」 및 인사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요 정책의 방향조율 및 협조관계 유지

바이오 技術 · 産業委員會 構成

□ 調整經緯

- 「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보고회의」에서 「바이오기술·산업위원회」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설치기로 대통령께 보고(2000.10)
- 과학기술기본법 국회심의과정에서 동 위원회 구성을 위한 「특별위원회」 설치근거 반영(2000.12)
- 과기부 업무보고시 금년 상반기중 국과위 산하에 「바이오기술·산업위원회」를 설치, 육성정책을 종합조정하고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 보고(2001.2)

□ 主要爭點

- 과기부 : 기술과 산업을 통합한 단일 위원회를 과기부에 설치
- 산자부 : 기술과 산업을 분리하여 산업부문 위원회는 산자부에 설치

□ 調整 結果 : 경제정책실무조정회의(2001.3.8)에서 조정

- 「바이오기술·산업위원회」 위원장은 과기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
 - 「바이오기술·산업실무위원회」 위원장은 재경부1급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
 - 실무위원회 밑에 기술분과위원회, 산업분과위원회를 두고 각각 과기부 국장과 산자부 국장이 담당
- * 「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」(위원장:과학기술부 장관)와의 기능조정은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1년간 위원회를 운영해 본 후 결정

영월댐 關聯 住民支援對策

□ 調整經緯

- 민간공동조사단 구성·조사결과를 토대로 댐건설 중단 결정

(2000.6.13)

- 농가부채 부담완화, 영농지원사업 및 정주기반시설 확충, 특별교부세 지원 적극검토 등 주민지원대책을 포함한 영월댐 중단 관련 후속대책 확정(2001.1.24)

□ 主要 爭點

- 강원도가 금년도에 시행할 총 29건의 지원사업(총 351억원 소요)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액 200억원중 미확보된 79억원 조치 요망
 - 자동화 버섯재배사 24억원, 농로정비 33, 민박마을 3, 기타 29
- 특별교부세(행자부) 또는 추경 증액교부금(기획예산처)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, 관계기관간 의견이 달라 지연

□ 調整結果 : 국무조정실(수질개선기획단)에서 조정(2001.4.17)

-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되, 금년도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시급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우선 지원
 - ※ 현재 행자부에서 79억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중
- 특별교부세 지급후 나머지 부족액은 금년도 추경편성 또는 2002년도 예산편성시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

在外國民 特別銓衡制度 改善

□ 調整背景 및 經緯

○ 調整背景

- 2002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결원이 발생해도 추가 합격·등록을 금지한 것과 관련, 외교통상부 등에서 재외국민특별전형의 경우 수시모집 추가등록 허용 등을 요청
 - 등록후 미등록 인원에 대하여 별도전형 없이 충원할 수 있도록 요청
 - 서울대, 연대, 고대 등 서울소재 주요 대학들의 전형일정 분산 요구
 - 상위권 대학들이 미등록결원발생시에 정시모집실시로 충원 희망

○ 調整經緯

- 외교부의 조정 요청('01.5)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과장급('01.5.20) 및 국장급회의('01.6.23)를 개최하여 조정

□ 調整結果

-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금지 규정을 시행도 않고 개정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어 곤란
-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금지로 인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생의 모집정원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가 적극 노력하기로 함
 - 수시모집 미등록결원에 대해서는 정시모집을 실시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해당 대학에 적극 권장토록 함
- ※ 양 부처간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를 '01.7.10 발표

母性保護關聯 3法 改正

□ 調整經緯

- '00.11 민주당은 ① 출산휴가의 연장(60일 → 90일), ② 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*의 고용보험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

* 현재 출산휴가(60일)는 유급휴가이며,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

- 반면 한나라당은 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

- '00.12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발의안 등을 병합 심사하여 대체로 민주당안에 따라 대안을 마련·논의하였으나, 추가비용 부담에 관한 부처간 이견 등으로 최근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음

□ 主要 爭點

- ① 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문제
- 기획예산처 : 수혜대상이 근로여성에 국한되므로 고용보험에서 전액 부담
- 노동부 : 2005년까지는 고용보험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1/2씩 부담하여야 하고 2006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부담

② 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일정기간 후에 고용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이관하는 문제

- 노동부 : 2006년 이후에는 고용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이관
- 복지부 : 건강보험의 재정사정상 건강보험으로의 이관은 곤란
→ 향후 모성보호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비용부담 주체 문제에 관하여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

□ 調整結果 : 부처간 협의 및 국회 상임위(환경노동위원회)의결로 쟁점 해소

○ 6.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출산휴가 연장 등 모성보호 관련 법규정 개정안을 확정·의결

① 유급출산휴가 기간을 연장(60일 → 90일)하고 늘어난 30일에 대한 추가비용은 고용보험과 재정에서 부담기로 함

② 시행일은 2001년 11월 1일로 함

中部圈 內陸貨物基地 建設

□ 事業概要

- 위치 : 충북 청원군 부용면, 충남 연기군 동면 일원(21만평)
- 시설 : 복합화물터미널(화물취급장 6동, 배송센터 4동) 및
내륙컨테이너기지(컨테이너 장치장 및 작업장 3동 등)
- 총사업비 : 3,529억원(정부 981, 민간 2,548)
 - * 정부지원분 981억원은 도로·철도·상수도등 기반시설 설치
 - * 민간사업비의 30%는 재정에서 용자(5년거치 15년 분할상환)
- 사업방식 : BOO(Build-Own-Operate)

□ 推進經緯

- 2000. 7.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
 - *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한 민간사업자는 없는 상황

□ 主要爭點 : 재정용자비율의 상향조정문제

- 건교부 : 수익성 제고를 통한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해 재정용자규모를 확대(현행 30% → 50%)
- 예산처 : 동일한 민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타권역 화물기지(4개)와의 형평성 상실로 여타사업의 실시협약 변경요구 촉발 우려

□ 調整結果

- 건교부가 예산처 요구를 수용하여 재정용자비율 상향조정없이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(6. 25)

京釜高速鐵道 統合情報시스템 構築

□ 事業概要

- 시스템 구성내역 : 영업분야(예약분야, 고객관리등), 운행분야(열차운행계획, 차량운용계획등), 경영분야(경영정보, 의사결정등), 인프라(역무자동화, 네트워크, 주전산기등)
- 총사업비 및 연차별 소요예산(단위 : 억원)

구분	계	2000년	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
시스템구축 및 감리	1,063	12	249	433	255	113

□ 推進經緯

- 2000. 3. 전체 시스템중 승차권예약발매 시스템분야에 대한 사업비 분담협약 체결(여타 분야 사업비는 철도청에서 부담)
 - * 사업비 : 452억원(철도청 324억원(71.6%), 고속철도공단 128억원(28.4%))
 - * 여타 분야 사업비는 전액 철도청에서 부담
- 2000. 12. 용역계약 체결(LG-EDS)
 - * 용역기간 : 2000. 12 ~ 2004. 12, 용역금액 : 1,048억원

□ 調整結果

- 2001년도 예산편성시 철도청 민영화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소요예산이 일부 미반영(소요액 249억중 84억만 반영)
 - 이에 따라 현재 철도청은 올해 부족분(165억원)에 대해서는 고속철도공단의 부담액중 일부를 조기 지원받고, 나머지는 철도청 예산을 전용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추진해 나갈 계획
- 내년도 예산의 경우 아직 세부 심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예산처·철도청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입장

建築物行政情報시스템 運營支援

□ 主要爭點

- 건교부 :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(행자부)의 자료변환을 통해 건축행정정보시스템(건교부)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행자부가 협조
- 행자부 : 자료변환에 앞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 규칙(건교부령)을 행자부·건교부 공동부령으로 개정하는 문제를 선결

□ 調整結果

-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차례 (5.18, 6.15, 6.22)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통보(6.29)
 - 공동부령 개정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의 조속한 자료변환을 통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함

京義線 複線電鐵化 事業推進

□ 事業概要

-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
 - 남북교역시 국가기간철도 확충을 위해 경의선 용산~문산간 48.6km 단선을 복선전철화
 - ※ 분단 이전의 복선철도 부지를 활용(사업기간 : '96~2006)

○ 투자계획 : 총 6,712억원

(단위 : 백만원)

총소요	기투입	2001예산	2002년이후
671,203	24,297 (기본·실시설계 완료)	106,122 (노반공사 계속)	540,784 (잔여공사 계속)

□ 推進經緯

- '92.6~'00.9 : 타당성 조사 및 노반 기본·실시설계 완료
- '99.11 : 노반공사(4개 공구중 제4공구) 착공
- '00. 1 : 환경영향평가 환경부협의 완료
- '00.12~'01.1 : 가좌↔운정간 도시계획시설 입안 의견 조회
 - 철도청·건교부→경기도→고양시
 - ※ 도심구간 지하화를 요구하며 현재까지 의견회신 없음(의견조회 5회)
- '00.12 : 노반공사(2, 3공구) 착공
- '01. 4 :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추진계획 설명
 - 고양시장, 의회, 시민대표 등 40명 참석
- '01. 5 : 고양지구간 지하화 요구관련 업무협의
 - 철도건설본부장, 고양부시장, 김덕배의원 참석
- '01. 5 : 교통영향평가(지상건설방안)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·확정
- '01. 7. 5 : 철도청장과 고양시장간에 지상화 전제 조건부 합의

□ 主要爭點

○ 고양시

- 분진·소음발생 및 도시개발 장애 등을 이유로 고양시(일산신도시) 도심구간을 지하화 또는 반지하화 요구

○ 철도청

- 경의선은 여객·화물수송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 철도로서 지하화할 경우 막대한 추가사업비(5,100억원 상당) 소요, 공기지연 및 철도기능상 문제 등으로 지하화는 불가

□ 調整結果

- 반지하화 효과를 갖는 OPEN터널식 방음벽 시공 등 쾌적성 확보 및 도시기능 저해방지를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조건으로 지상화

□ 措置計劃

- 쟁점사항에 대한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,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필요절차를 관련법규에 의거 조속 이행하여 사업추진
- 불필요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청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설득·협의를 하고, 고양시는 주민설득 등 사업시행에 협조

龍潭댐 用水配分問題

□ 推進經緯

- 전주, 군산 등 전주권의 용수공급과 금강 중하류 홍수방지를 위해 용담댐 건설 추진 및 댐용수 배분계획 결정·고시
 - 사업기간 : '90~2001(사업비 1조 4,963억원)
 - 저 수 량 : 8.1억톤 (댐 길이 : 498m, 높이 : 70m, 도수터널 22km)
 - 용수공급량 : 178만톤/일(전주, 아리, 군산 135, 금강하천유지용수 43)
- 2000.11 댐 본체 공사를 완료하였고, 본격적인 담수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중

□ 主要爭點

① 용수배분 문제

- 대전·충청권에서 댐설계 당시 전주권의 용수수요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용수배분 재조정 요구

구 분	계획(전북)	재조정요구(대전·충청권)
전주권	135	71
대청호	43	107
계	178	178

- 전북도에서는 91년 국가기본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용수배분 계획의 재조정 논의는 국가계획에 대한 불신과 갈등 초래를 우려, 반대 입장

② 담수시기 문제

- '98.12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의 관계부처 조정회의에서 담수시기는 수질보전대책 마련후 금강수계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나, 하수처리장 건설 등 수질보전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 담수 개시(2000.11.9)
 - 부분담수 개시에 대해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미이행 사유로 담수중지를 요청(2000.11.10)하였고, 대전·충청권에서도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한 뒤 담수 주장
 - 전북도에서는 전주권의 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 조속한 담수를 주장

□ 調整結果(7. 5, 3차 금강수계협의회)

- 용담댐 물배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조사위원회 구성·운영규정안 합의
 - 공동조사위원장(전북·충청권 부지사 각 1인), 운영위원(7인) 구성·운영
 - 용담댐 상류 수질보전팀(7인), 금강수환경 및 생태계조사팀(8인),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이용·배분용역팀(운영위원회에서 대행) 등 3개 조사팀 구성·운영
 - 용수의 합리적 이용·배분용역의 비용은 4개 자치단체가 부담하고, 그 외의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
- 담수시기는 수질보전대책의 환경부 승인 및 오염원조사팀의 조사후 협의·결정
 - 담수시기가 결정될 때까지 전북권 생활용수 1일 50만톤 확보 및 비상방류관을 전량 개방하여 하루 방류

IT業務 領域調整

□ 調整經緯

- 관계부처가 조정을 요청한 20건중 문화부·산자부·정통부·공정위 관련 18건에 대하여 재경부가 중심이 되어 조정 추진(2건은 국무조정실 담당)
- 1차 관계차관간담회(2001.5.11) 개최
 - 직제 존중, on-line과 off-line간의 업무분장 괴리방지 등 조정원칙 합의
- 2차 관계차관간담회(2001.6.28) 개최
 - 전자상거래추진체계 등 15개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 도출
 - post-PC, 디지털콘텐츠보호, 개인정보보호 입법방안 등 3개 사항에 대해서는 미합의
- 3차 관계차관간담회(2001.7.6) 개최
 - 17개 사항에 대한 잠정 합의안 마련
 - 개인정보보호 입법방안(공정위-정통부 관련)에 관해서는 추가 협의중
 - ※ 이 과정에서 7차례의 관계국장회의 및 수차례의 양자협의 실시
- 2001.7.13(금)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, 확정

□ 調整結果(主要內容)

- 정보제공이 주된 기능인 단말기개발은 정통부가 그 외 단말기는 산자부가 개발
- 전자상거래는 산자부가 총괄하고, IT인력양성은 정통부가 주관 하되 정책수립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
- 정보기술표준은 KS체제로 일원화
- 게임산업 육성은 문화부가 게임콘텐츠를 주관하고 산자부·정통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기반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

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改正關聯

□ 事業內容

○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

- 읍·면, 도서·벽지중학교 → 시지역 중학교까지 확대
-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연차별로 2004년까지 완성

< 연차별 재정 소요 >

(억원)

구분	재 원	2002년 시지역1학년	2003년 시지역1,2학년	2004년 시지역1,2,3학년
기 존 재 원	지자체보급전입금	840	1,680	2,519
	지방교육재정교부금	1,190	2,380	3,571
추 가 재 원	증액교부금 (등록금 결손분)	2,664	5,328	7,993
합 계		4,694	9,388	14,083

□ 調整經緯

-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전국적 확대 지시 (대통령 지시- '01. 1. 18)
- “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확대 실시” 국무회의 보고('01. 1.22) 및 주무장관회의 상정 심의('01.3.24)
- 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”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('01. 4.3~5.7)
-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”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('01. 5. 28) 및 차관회의 개최('01. 7. 5)
-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(2001.7.13)

□ 主要爭點

-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 부담 방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
 - 행정자치부
 - : 중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
 - 교육인적자원부, 기획예산처
 - : 국가에서 일부부담하되, 시지역 교원봉급은 현행대로 지자체 부담

□ 調整結果

- 2002~2004년까지 수업료·입학금·교과서 대금은 국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보전하고,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시지역 중학교 공립교원 봉급전입금은 현행대로 유지
- 2005년이후 재원부담방안은 재정여건 등을 검토 추후 결정

社會福祉公務員 手當支給

□ 調整經緯

- 작년 9월 총리님의 지시(노원구청 방문시)에 의해 사회복지 공무원(4,800명) 수당지급을 위해 국비 15억원 확보(작년정기국회)
 - 지방비 포함 1인당 매월 3만원 수준(서울 50%, 시·도 20% 부담)
- 복지부는 수당지급을 위해 행자부에 「지방공무원수당규정」에 근거규정 신설을 요구(1.9, 3.15)
- 행자부는 신규수당 신설은 어렵고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」에 의해 「활동비」로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 통보(3.23)
- 5. 17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지급방안 논의

□ 主要爭點

< 기획예산처 >

- 사회복지공무원 수당은 인건비 성격으로 「보조금법령」에 의해 국비와 함께 반드시 지방비가 포함되어 집행되어야 함
- 「지방공무원수당규정」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이 당초 예산확보 취지에 부합

< 행정자치부 >

- 지자체 구조조정을 추진('02년까지 7,500명 감축)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분야 공무원의 증원과 수당지급은 형평성이 결여
- 수당을 특정업무 활동비 성격으로 변경하여 우선 집행하고 연말 수당규정 개정 추진

□ 조정결과 : 8.10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

- 9월부터 활동비 성격으로 지급하고,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은 2002년 하반기중 개정

IT 벤처企業去來所 設立推進

□ 推進經緯 및 爭點

- 산자부는 '00.4 “기술이전촉진법”에 의거, 민·관 공동 출연으로 재단법인 “(재)한국기술거래소”를 설립
- 정통부는 현재 “IT벤처기업거래소”의 설립을 검토중이나,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음
- 산자부와 한국기술거래소측은 한국기술거래소와 IT벤처기업거래소간의 기능중복을 우려

□ 調整結果

- '01.8.7 재경부 조정안을 산자, 정통 두 부처에 전달
 - IT벤처기업거래소는, 기술거래소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므로, 설립하지 않으며,
 - 정통부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술거래소 임원진 구성 및 운영방안 개선
- 이에 대해 정통부는 향후 IT벤처기업거래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설립을 추진하게 되더라도,
 - 기능, 형태, 정부참여 여부 등이 기술거래소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표명

動映像(MPEG) 關聯 民官合同 對應體制 構築

□ 調整背景

- 정통부는 MPEG Korea Forum('00.7 창립)을 전략포럼으로 지정하여 지원중
 - 동 포럼은 MPEG 표준개발, 국제표준회의 참가 등 표준화 활동을 주로 수행
 - * MPEG(Moving Picture Experts Group)은 동화상파일 압축방법으로 '88년 설립된 동영상 전문가 그룹의 명칭을 따서 MPEG1, MPEG2, MPEG4식으로 명명
- 산자부(기술표준원)는 MPEG기술의 상용화와 특허료 책정 등을 논의하는 M4IF(MPEG-4 Industrial Forum)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, 별도의 민간포럼인 MIF Korea 설립을 추진중
 - 정통부는 표준화와 상용화 및 특허는 밀접히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포럼 신설을 반대

□ 調整結果

- 재경부 중재로 다음과 같이 산자부-정통부간 합의(2001.8.29)
 - MIF Korea는 설립하지 않으며, 산자부(기술표준원, 특허청)와 MIF Korea 추진위원들이 MPEG Korea Forum에 참여하여 활동

IT人力養成 總括體制 構築關聯

□ 調整背景

- 교육부는 2001.5월 청와대에서 열린 “산업경쟁력 강화회의”시 제기된 IT인력난 해소대책으로 전경련측이 제안한 “IT교육 협의회” 구성을 추진
 - * 교육부총리와 전경련회장이 공동의장, 유관부처 장관 및 경제5단체장과 주요대학 총장이 참여예정이며, 산하에 기획·연구개발·교육훈련 등 3개 실무위원회 구성계획
- 이에 대해 산자·정통부는 “IT교육 협의회”는 2001.4월 발족한 정통부 주관 “IT 인력양성 대책반”과 기능이 중복되고, BT·NT 등 유사성격의 인력양성 기구의 난립이 우려되므로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“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대책반”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

□ 調整結果

- 2001.8.7일 교육부와 전경련측의 오찬간담회를 통해
 - 전경련측이 제안한 “IT교육협의회”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
 - 정통부에 이미 설치된 “IT인력양성 대책반”을 활용기로 함

※ 참고

- 정부는 전략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분야별로 주무부처 주관으로 대책반을 운영중
- 총괄반(교육부), IT(정통부), BT(과기부, 산자부), NT(과기부), CT(문화부), ET(환경부), ST(과기부, 산자부)

地方公企業 運營改善

□ 調整背景

-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
 - 부처 및 시도의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
- 개정안에 대해 시·도에서 이견 제시

□ 主要爭點

- 현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는 「사장추천위원회」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변경
 - 시·도에서 현행 유지 요구
- 지방공기업(306개)에 대한 평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→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
 - 시·도에서 이견제시

□ 調整結果

- 시·도와의 개별적 설명 및 협의를 거쳐 행자부(안) 대로 추진키로 함
 -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함
 - 지방공기업 평가업무는 행자부장관이 수행함

※ 금년 정기국회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제출예정

□ 經濟調整官室 □

FIU 情報通報機關 範圍 關聯

□ 調整背景

- 불법적인 자금세탁 차단을 통한 중요범죄의 확대재생산 방지를 위해 FIU(Financial Intelligence Unit) 설립 추진
 - ※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·분석하여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기관
- 근거법률인 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정부안 작성과정에서 FIU로부터 자료를 통보받는 기관*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행자부간 이견
 - ※ 검찰총장, 국세청장, 관세청장, 금융감독위원회

□ 異見內容

- 법무부 : 경찰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되어 있으므로, 경찰에의 별도 자료통보는 필요없음
- 행정자치부 :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있으므로 통보기관에 경찰청을 포함시켜야 함

□ 調整結果

- FIU가 경찰청장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 - 범죄수익의 다과, 범죄의 종류 및 죄질, 관련자의 신분,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FIU의 장이 검찰총장·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준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정보 제공

□ 調整效果

- FIU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

對外經濟長官會議規程 制定關聯

□ 調整背景

- 대외경제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 기존 「경제정책조정회의」에 통합되어 있던 「대외경제장관회의」를 분리·신설하고 이를 위해 ‘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’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추진
- ‘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’ 제정과정에서 차관급 실무조정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부처간 이견

▲ 대외경제실무조정회의 (제9조)

- 구성 : 통상교섭본부장(의장), 대외경제 관련 기관의 차관급
- 양자·다자·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통상교섭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심의·조정

□ 異見內容

- 외교통상부 : 통상교섭본부장을 의장으로 신설되는 실무조정회의 기능에 통상교섭뿐만 아니라 대외경제협력, 정상회의 경제분야 의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
- 재정경제부 : 대외경제협력 및 정상회의 경제분야 의제는 통상교섭과는 달리 실무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그간 통상교섭본부에서 실무조정을 실시한 전례도 거의 없으므로 상기 분야들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조정토록 운영

□ 調整結果(2001.8.24, 국무조정실장주재 관계차관회의)

- 실무조정회의 기능에 ‘대외경제 관련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’ 추가

□ 調整效果

-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실무조정위원회 기능의 정립

電子商去來 業務領域 調整

□ 調整背景

- 산자부가 2000. 2월 대통령주재 “전자상거래 전략회의”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총괄기능을 맡게 되어 전자상거래 관련 기존 직제를 확대개정하려 하자 정통부가 업무중복이라는 이유로 이견 표출

□ 異見內容

주요 쟁점	산자부의 주장	정통부의 주장
전자거래관련 기술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자거래관련 기술개발은 산자부의 고유업무영역임 · 정통부 직제는 전자상거래중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에만 해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통부 소관사항으로서 정통부 직제와 중복 ※ 정통부 직제 제11조 제3항 제22호
전자거래관련 인증 및 표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통부 직제상의 인증은 전자서명인증을 의미하나, 산자부 개정안은 인증지원업무를 의미 · 표준화는 산업표준화법 등에 따라 산자부의 소관업무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통부 소관사항으로서 정통부 직제와 중복 ※ 정통부 직제 제11조 제3항 제45호, 제46호
정보기술 표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한국대표창구가 기술표준원이므로 산자부가 담당하는 것이 옳음 · 정통부의 직제령은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과 관련된 순수통신 분야에 한정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통부 소관사항으로서 정통부 직제와 중복 ※ 정통부 직제 제11조2 제2항 제30호

□ 調整結果(2000.8.31, 국무조정실장주재 관계차관회의)

- 산자부의 전자상거래관련 직제 개정안 조정 합의
 - (당초) 전자문서 등 전자거래 관련 표준화 및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 - (조정)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표시 등의 표준화 및 관련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
□ 調整效果

- 양 부처간 전자상거래 관련 직제 내용 조정을 통해 업무중복 완화
 -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화, 기술개발, 인증 등 활성화 도모

採鑛・採石關聯 山林毀損 防止對策

□ 調整背景

- 채광·채석은 필연적으로 산림훼손을 수반하므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는 것이 필요

※ 2000.3월, 5월 : 국무총리, 채석·채광관련 산림훼손 방지종합대책 수립 지시

□ 異見內容

구 분	산림청	산자부
채광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별도의 형질변경허가기준이 없어 울창한 산림에서도 채광가능하여 산림훼손 초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광인가와 산림형질변경 및 산림복구 업무가 이원화
채석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직절개면 채취로 사실상 복구 불가능 ○ 부실채석업체의 채석중단으로 산림훼손 유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석업은 광업임에도 지난 '88년부터 관리가 이원화되어 산림청의 석재개발 전문지식 부족으로 난개발 초래
복구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별도의 채광지·채석지 복구 기준 없음 ○ 하자 보수기간(2년)이 짧아 복구 관리에 어려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형질변경 기간 및 면적이 적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복구계획 불가능 ○ 민간업체에게 전문적 복구 기술이 없어 형식적인 복구
채광을 이용한 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광을 채석으로 전용하여 산림훼손 유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업법상 채광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(대판 98.12.23)

□ 調整結果(2000.7.28, 경제조정관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)

○ 채광 제도

- 사전 계획성 있는 채광을 할 수 있도록 산림형질변경 허가 면적과 기간을 확대(산림청은 허가 면적 및 기간 하한선 설정)
- 광업권자는 산림형질변경 신청시 광물부존지역에 대한 연도별 채광계획과 채광을 위한 연도별 산림형질변경계획 작성·제출
- 타당성 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기준을 도입

○ 채석 제도

- 부실업체의 채석방지를 위한 『채석업등록제도』 도입
- 수직절개면 형성 방지를 위한 『채석기준』 설정

○ 복구 제도

- 복구설계승인기준 도입
- 복구비 예치제도 개선(일괄납부 ⇒ 분할납부)
- 산림복구 하자보수기간을 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

○ 채광을 이용한 채석

- 채광·선광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긴 석재(골재포함)는 산림법에 따라 광업권자가 가공 및 판매 처리
- 채광을 이용한 채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광업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산업자원부 산하 광산보안사무소로 하여금 지도·점검 강화

□ 調整效果

- 부실업체의 채석방지를 위한 「채석업 등록제도」 도입, 「채석기준」 설정 및 산림형질 변경허가 면적 기간 확대 등을 조정함으로써
 - 채광·채석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디지털컨텐츠識別體系(DOI) 開發 推進體制 調整

□ 調整背景

- DOI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보통신부(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)와 문화관광부(한국출판문화협회)가 각자 자기부처 소관임을 주장함에 따라 정통부에서 동 건에 대한 조정을 요청

* 또한, 감사원에서 동 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조정토록 통보(6.30)

※ DOI(Digital Object Identifier ; 디지털컨텐츠 식별시스템)의 개념

- 종래의 웹사이트 주소를 통한 컨텐츠 인식방식인 URL(Uniform Resource Locator)과는 달리, 컨텐츠 자체에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URN(Uniform Resource Name)의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추진, 이 중 하나가 DOI임

□ 異見內容

쟁 점	정보통신부	문화관광부
목 적	· 인터넷상의 컨텐츠 유통·관리 효율화	· 저작권 보호
컨텐츠 주관	· 기존 저작물과 DB는 별도의 저작물로서, DB산업 지원·육성은 정통부 소관 · 인터넷상 정보의 약 25%만이 문화관련 정보	· 출판, 음악, 영상 등 컨텐츠 저작권은 문화부에서 관장
외국사례	· 초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H/W, S/W업체 및 정보보호, DB 관련 기관이 주도	· 출판협회 등 저작권 관련단체 중심으로 추진
등록관리기관	·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	· 한국출판문화협회

□ 調整結果(2000.9.18, 산업심의관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)

- 정보통신부(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)와 문화관광부(대한출판문화협회)는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컨텐츠 식별체계 개발사업이 중복투자 방지 등을 포함,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함
 - * DOI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시스템 및 응용체계의 개발이 함께 요구되므로,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기본시스템 및 응용체계 개발에 있어 기술적 측면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체 구성 등 지속 협의
 - 정보통신부는 DOI 도입관련 정책을 총괄하고, 전반적인 DOI 부호체계 개발 및 할당, 전체 DOI 등록·검색 및 유통관리 등 DOI 기반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함
 -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 분야의 DOI 도입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DOI 부호체계 개발 및 할당, DOI 등록·검색 및 유통관리 등 응용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함
 - DOI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공감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,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이 참여하는 “협의회”를 구성·운영함

□ 調整效果

- 양부처 및 관리기관의 역할 조정 및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DOI개발 활성화 도모

科學技術基本法 制定 關聯 調整

□ 調整背景

-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총괄규범 정립을 위한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서, 2000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'99.11월 과기부와 민주당간 합의하였으나

※ 2000. 5~6월 과기부는 동 기본법을 성안하여 관계부처 협의, 입법예고, 공청회 등의 절차 진행

- 과기부·산자부 등 관련 부처간에 기본법안에 대한 이견사항이 발생하여 조정 필요

□ 異見內容

과학기술부	산업자원부 등
-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와 사무국 기능은 과기부가 담당	- 국과위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, 별도의 사무국 설치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계는 현행체제 유지	- 평가의 객관성·공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- 조사·분석·평가 사업과 사전조정은 분리하여 실시	- 조사·분석·평가 사업과 사전조정을 통합하여 실시
- 국과위 업무지원은 과학기술평가원이 담당	- 과학기술평가원 설립근거 조항을 타법으로 이관
- 출연연구기관의 기관 고유사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	- 출연연구기관의 기관고유 사업에 대한 평가 제외

□ 調整結果(2000.8.24, 산업심의회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)

-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기능 및 사무국
 - 국과위 간사와 사무국기능은 과기부가 담당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계
 - 평가의 공정성·객관성 확보를 위해 「종합평가지원단」을 구성·운영
 - 조사·분석·평가 사업과 사전조정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가 마련
 - 과학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기본법에 두고 국과위 간사의 행정적 사무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 준치
 -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 고유사업 및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조사·분석·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국과위에 제출

□ 調整效果

-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보좌기능 담당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제 등에 대한 조기 조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

遺傳子變形生物體(LMO) 國內履行體制 構築 調整

□ 調整背景

- 2000.1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회의에서 「바이오안전성 의정서 (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)」가 채택됨에 따라 국내이행 체제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역할 조정필요

※ 의정서에 따른 국가이행사항 내용

- 국가행정기관(Competent National Authority)과 국가연락창구(National Focal Point) 지정·운영
- 환경 LMO 교역시 사전통보협의(Advance Informed Agreement)절차 적용·관련체제 구축
- 식용, 사료용, 가공용 LMO 수출입 관리제도 및 체제구축
- LMO 용도별 위해성 평가·관리 행정체제 구축
- 의정서 이행법 마련 및 관계부처별 관련법 정비

□ 異見內容

- 법률의 형태와 주관부처
 - 대부분의 부처가 별도의 단일법 제정
 - 과기부, 산자부, 환경부 등이 주관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
- 국가책임기관의 지정
 - 수출입을 전담하는 부처가 총괄하는 단일기관 지정(산자부)
 - LMO 품목별로 개별 부처를 복수로 지정(과기부, 농림부, 복지부, 환경부 등)
- LMO 안전성평가 체계
 - 창구를 산자부로 일원화하고 평가는 각 부처에 위임(산자부)
 - 평가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담당하고, 심사는 개별 부처가 담당(과기부 등)

- 생명공학/생물산업 육성을 법률에 포함시킬지 여부
 - 생명공학/생물산업 육성을 법률(안)에 포함(산자부)
 - LMO 안전성만을 법률(안)에 포함(과기부, 농림부, 복지부, 환경부 등)
- 기타사항
 - LMO 표시방법, 연구개발 단계의 안전성 포함여부 등

□ 調整結果(2000.9.10, 산업심의관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)

- 산자부 주관하에 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이동 등에 관한 법률” 제정 추진
- 생산승인, 수출입 승인 등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성평가·관리는 농림부, 산자부, 복지부, 환경부, 해수부 등 각 부처가 소관분야별로 담당
 - 대외협의를 및 보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자부를 동 의정서의 국가책임기관, 외교부를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
- 국제정보교환을 담당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국내 기관을 지정·운영
- 안전성확보 등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「바이오안전성위원회」 구성
- 안전성 관련사항은 “바이오안전성위원회”에서 심의하고, 기타 사항은 생명공학 육성법상의 “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”에서 심의
- 효율적인 R&D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존 생명공학 육성법의 R&D 업무분장체제하에서 R&D 조정노력 강화

□ 調整效果

- 관련 법률 제정, 부처별 담당업무 조정 등을 통해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내 이행체제를 조기 구축

光州地域 光産業 支援 研究機關 設立 調整

□ 調整背景

- 2000. 7월 광주 광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업체지원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
- 산자부·정통부가 별도의 지원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여 중복 우려

□ 異見內容

- 정통부
 - 광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광통신 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전자통신연구원(ETRI) 광주/전남 연구 센터를 설치하여 동 센터에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
 - ※ 2000.12.20 ETRI에서 광주 광연구센터 설립계획(안)을 산업기술 연구회에 상정
- 산자부
 - 산업자원부 및 광주시 등에서 설립(2000.12.27)한 "한국 광기술원"에서 업체지원 필요
 - ETRI광주/전남연구센터(광통신전문)을 설립하여 업체지원시 한국 광기술원의 역할과 중복

□ 調整結果(2001.2.8, 산업심의관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)

- 광주지역 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ETRI광주/전남연구센터를 설치기로 함
 - 다만, 두 연구기관의 기능중복과 이에 따른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산자부와 정통부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함

□ 調整效果

- 광주 광산업 기술지원 연구기관 설립방안을 조기에 매듭 짓고 양 연구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광산업단지 입주 기업에의 효과적인 지원 가능

不正競争防止法 改正 關聯 異見調整

□ 調整背景

-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사용은 기존의 상표와는 무관하게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 등록자가 서로 다를 수 있음
 - 특허청은 도메인네임 등록자가 자기의 웹페이지에서 타인의 상표를 허락없이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유명상표 및 상호에 내재해 있는 Brand Power나 명성을 손상 또는 희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재코자 부정경쟁 방지법 (부정 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) 개정 추진
 - 이에 정통부가 반대

□ 異見內容

- 특허청
 - 유명상품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상 또는 희석시키는 행위를 “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”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책임을 묻도록 함
- 정통부
 - 현재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한 법적성격, 국내판례 등이 논의되는 시점이므로 법개정을 당분간 유보하는게 바람직

□ 調整結果(2000.11.7, 산업심의관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)

-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안을 토대로 개정을 추진하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신설규정인 제2조제1호 “다”목에 대해서는
 - 양 부처간 추가적인 협의의 여지를 마련키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, 향후 시행령 개정시 적용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함

<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조정안>

제2조제1호다목

당 초 안	조 정 안
다.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일으키는 <u>행위외에 全國的으로 널리 認識된 他人의 姓名·商號·商標·商品의 容器·包裝 그밖에 他人의 商品 또는 營業임을 표시한 標識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商品을 販賣·頒布 또는 輸入·輸出하는 등 그 他人의 標識의 識別力이나 名聲을 부당한 방법으로 損傷 또는 稀釋시키는 행위</u>	다.----- ----- <u>행위외에 非商業的 使用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正當한 사유없이 전국적으로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輸入·輸出하여</u> ----- ----- ----- <u>損傷시키는 행위</u>

□ 調整效果

- 유명상품과의 혼동외에 유명상품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포함 시킴으로써 유명상표의 보호범위를 확대

部品・素材 特別法 制定 關聯 調整

□ 調整背景

- 2000.6월 부품·소재산업의 집중 육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산자부가 다양한 지원시책을 포함한 부품·소재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
 - 정통부, 기획예산처 등에서 특별법 제정에 반대

□ 異見內容

- 정통부 : “부품·소재산업” 개념이 불명확하고 법제정 효과 미약
- 공정위 :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 승인 예외 인정은 곤란
- 재경부 :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근거 신설은 곤란
- 예산처 : 특별법 제정을 통한 선별적 지원은 오히려 경쟁력 약화 초래, 특별법 제정보다 선진 외국 부품·소재기업 유치가 바람직

□ 調整結果(2000.11.21, 산업심의관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)

-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특별법 제정에 합의
 - 신뢰성 평가·인증사업 추진주체 : “산자부장관과 정통부장관이 합의하여” → “관계행정기관의 장”으로 조정
 -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품·소재발전위원회의 공동간사제도 등(산자부·정통부)을 산자부로 단일화
 - 부품·소재발전기본계획, 추진실적 등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

- 세제지원 근거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존치
-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산자부 장관의 부품·소재분야 구조조정 확인제도를 도입하되, 해당 산업의 경쟁력강화 도움여부를 사전 검토토록 함

□ 調整效果

- 부품·소재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있는 부품·소재산업 육성 지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
 - 부품·소재 육성대책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도모
- ※ 동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01.7.4 제1회 부품소재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 등을 확정,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음

情報通信設備의 設計・監理制度 調整

□ 調整背景

- 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하여 건교부가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·감리는 동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정통부에서 동 건에 대한 조정을 요청

□ 異見內容

쟁 점	건설교통부	정보통신부
주장내용	○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설계·감리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	○ 수용불가
이 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설비는 종전 정보통신공사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으나,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 ○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·감리를 분리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발주절차가 복잡 ○ 부실감리 발생시 정보통신공사법령에는 처벌규정이 미약해 사후 책임 강화 곤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조항이 모법에서 삭제된 것은 기술력 있는 정보통신 전문업체가 설계·감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 ○ 이를 시행령에 다시 규정할 경우 그간의 문제점이 또다시 반복되고 입법취지에도 배치 ○ 건설분야 설계·감리업자도 자격을 갖추면 통합발주가 가능하고, 사후 책임 강화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보완예정

□ 調整結果(2001.6.15, 산업심의관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)

- 국무조정실은 공공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정보통신공사 중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설계·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정안을 제시
- 정통부는 조정안 대신 건교부의 요구안을 수용하되, 건교부가 문제점으로 제시한 용역업체의 사후책임 규정을 보완한 후 동 규정의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완료

□ 調整效果

- 건설공사에 부수되어 설치하는 정보통신 설비를 건설업자가 일괄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·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음

마포 石油備蓄基地 移轉 調整

□ 調整背景

- 서울시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근의 성산동 마포 석유비축기지 이전을 대통령께 건의('99.7.14)
- 산자부에서 관계기관회의를 4회 개최하였으나 조정실패, 국무조정실에 조정요청(2000.2.14)

□ 異見內容

- 산자부·석유공사 : 서울시에서 서울 시내의 사유지를 대체부지로 제공하고 신규 비축기지의 건설사업비 부담
- 서울시 : 고양시 석성동에 대체기지를 건설하고 건설사업비는 산자부의 예특회계에서 지원
- 비상기획위원회 : 고양시는 접적지역으로서 이전 곤란

□ 調整結果

- 2000.6.16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회의 개최
- 마포비축기지에서 구리 비축기지로 석유 이송
- 마포기지 원상회복 비용과 비축석유 이송비용은 서울시가 부담

□ 調整效果

- 월드컵대회의 안전문제, 주변경관 저해문제의 해결로 성공적 개최 지원

「新技術 活用增進 政策協議會」構成・運營

□ 調整背景

-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개 부처가 신기술 인정/지원 제도를 운영중이나 실제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
 - '93년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2,921건(2001.6.30 현재) 지정
 - 과기부(KT마크) 1,283건 · 산자부(NT/EM마크) 1,007건
 - 정통부(IT마크) 300건 · 건교부 285건 · 환경부 46건

□ 調整結果(2001.7.11, 산업심의관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)

- 신기술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연계·협조·조정 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, 「정책협의회」를 통하여 개선 추진중
 - 위원장 : 산업심의관
 - 위 원 : 과기부·산자부·정통부·환경부·건교부·조달청·중기청·국정홍보처 등 관련부처 담당과장
 - 추진중인 과제
 - 신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(과기부 주관)
 - 심사위원 Pool 공동구성·운영 및 평가기법개발(정통부 주관)
 - 관계부처간 협력사업 발굴·추진(산자부 주관)
 - 신기술 판로확대 방안 도출(중기청 주관)

□ 調整效果

-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확대 및 공금사항·신청방법·심사결과·신기술 내용등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 판로확대 가능
- 신기술의 신뢰성 제고 및 일관성있는 지정·지원 제도운영 가능

國際海上旅客航路 開設關聯

□ 推進背景

- 중·러·일 등 인접국가들과의 교류·교역확대에 따라 국제 해상항로 개설이 증가되고 있으나, 부처간 업무연계 미흡으로 개항준비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 노출

□ 爭點事項

- 국제여객항로 개설을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추진함에 따라 일선 통관 관련기관(CIQ) 근무인원과 검색장비 등의 적기 확보가 어렵고 나아가 보안 활동에도 차질 초래

□ 調整經過

- 국제해상여객 항로 개설시 부처간 사전협의를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시
- 국무경제 91510-312(2000.8.24)

□ 調整結果

- 외항정기여객 항로개설을 추진코자 할 경우 법무부·보건복지부·관세청 등 출입국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여객·화물의 통관 수용여부 사전 협의 등 협조체제 강화
- 「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 요령」(해양수산부 고시 제99-82호)에 협의근거 규정 신설

不良 輸入農水産物 根絶對策 推進

□ 推進背景

- 수입 농수산물에 이물질이 투입된 불량품과 부정식품이 유통됨에 따라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수입 농수산물 검역 및 부정식품 단속대책이 필요

□ 爭點事項

- 수입 농수산물 검역 및 불량·부정식품 단속관련 기관이 법무부·행정자치부·농림부·해양수산부·관세청·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다수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

□ 調整經過

- 2000.8.25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법무부·행정자치부·농림부·해양수산부 차관, 관세청·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농수산물의 통관검사 강화대책 등을 중점 논의

□ 調整結果

- 각부처별로 수입 농수산물 및 부정식품 단속대책 강력 추진
- 중국산 불량 수산물(납꽃게 등)의 근원적인 수입방지를 위한 한·중간 실무회담 개최
 - 일시 : 2000.9.21(2일간 북경)
 - 내용
 - 수출입 수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협정체결 추진
 - 중국은 한국수출 수산물에 대하여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실시, 중국검사기관 위생증명서 첨부약속 등

京釜高速道路 橋梁龜裂發生 關聯

□ 推進背景

- 경부고속철도 7-3공구 상촌고가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교좌 장치 몰타르 곳곳에 미세균열 발생으로 안전성 논란

□ 爭點事項

- 발생한 균열에 대해 원인규명과 보강공사를 위해 관련 절차서에 따라 정밀관찰후 보수방법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
 - 2000. 9.10 언론보도 이후 조기에(9.30까지) 보수보강을 완료키로 결정

□ 調整結果

- 2000.9.19, 관계기관의 추진계획과 검토의견을 국무총리께 보고하여 추진계획을 수정토록 지시·조치

<지시내용>

- 공사중 균열은 원인규명을 위해 균열 진행상황을 충분히 관찰후 균열진행이 안정될 때 보수보강이 실시되어야 하므로 “균열을 충분히 관찰하여 원인규명후 보수 보강”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지시

仁川國際空港 關聯 調整

□ 推進背景

- 인천국제공항의 차질없는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요구
- 지방세 감면시 세수효과는 없는 반면 공항개항에 따라 주변 지역정비 및 개발수요가 급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대책을 요구(인천시)

□ 爭點事項

-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과 관련된 제반여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「공항주변지역정비 기본계획」수립과 지원대책 마련 필요 (인천시)
- 인천시가 공항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차원의 실태조사는 불필요하고, 재정 지원도 곤란(건설교통부)
 - 다만, 용유도외곽도로(5.16km) 및 배후단지~남측해안도로 (2.5km)개설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제2단계 사업에 포함 추진

□ 調整經過

- 2000.4.7 인천국제공항 지방세감면 관련 정책건의서 제출(인천시)
- 2000.8.10 인천시장 국무총리 면담

□ 調整結果

- 건설교통부에서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(국무총리지시)

首都圈 廣域都市圈 指定 關聯

□ 推進背景

-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편방안('99.7.22)에 따라 2000.7.7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·인천시 및 경기도내 20개시 4개군을 수도권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였으나, 경기도에서 반대

□ 爭點事項

- 건설교통부안은 서울을 중심도시로 하는 단핵구조로서 인구·산업·업무 등의 집중유발을 초래하므로 광역도시권에서 제외된 7개 시·군을 포함하여 수도권 전체를 5개의 광역도시권으로 구분·지정하여 수도권 균형개발을 실현 (경기도)
- 수도권을 5개권으로 구분하면 5개 권역간 연계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의미가 상실되며, 서울이 5개로 분할되면 오히려 권역간 교통처리, 환경문제 등을 유발 (건교부, 서울시, 인천시, 국토연구원)
 - * 경기도 요청에 따라 경기도내 7개 시·군을 포함,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도시권으로 지정(2001.9.1, 중앙도시계획위원회)

□ 調整經過

- 2000.8.1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기관 조정회의 개최

□ 調整結果

- 경기도는 권역에서 배제된 시·군의 포함문제 등을 관계 시·군과 협의하여 입장을 재정리한 후 건설교통부와 재협의하고, 건설교통부는 경기도의 제시안에 대해 재검토

國家地理情報體系法 施行令 制定關聯 調整

□ 推進背景

- 2000.1.21 제정 공포한 「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법률」(7.1시행) 시행령 제정안이 관계부처 이견으로 6.16차관 회의 보류

□ 爭點事項

-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리정보 분과위와 지적정보 분과위를 통합(기획예산처)
-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,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소관부처 공무원으로 대체 (산업자원부)
- 지하유적을 기본지리정보 정의에 포함 (문화관광부)

□ 調整經過

- 2000.6.20~6.21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

□ 調整結果

- 지리·지적 분과위원회는 원안대로 분리 설치하고, 「위원회 운영세칙」에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
- 위원회 심의사항중 「분야별·사업별 투자우선순위」를 삭제하고,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방식을 「위원장 임명」→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」으로 수정
- 국가 및 시·도 지정문화재를 기본지리정보중 「시설물」에 포함하고, 매장문화재는 주제정보로 분류하고 제2차 국가 CIS 기본계획에 반영

首都圈 工場總量制度 改善 關聯 調整

□ 推進背景

-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회의(2000.7.7)를 거쳐 ①공장총량 추가배정 ②총량산정방식의 법제화 ③향후 공장설립 승인시 총량범위내 설립조건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결정 하였으나 공장총량 확보조건부 공장설립 승인제도에 대해 경기도에서 이의 제기

* 수도권정비위원회(2000.5.23)에서 2000년도 공장총량 총 97.1만평을 확정·고시하였으나 IMF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총량 조기 소진

□ 爭點事項

- 적법하게 승인된 공장설립을 공장건축총량 부족을 이유로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며 위법성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음.

* 2000.8 수도권정비위원회(서면) 심의를 거쳐 1차로 공장총량을 추가로 배정(9.5)하고, “총량확보조건부 공장설립승인제도” 도입을 위한 산업자원부 지침 시달(9.8)

□ 調整經過

- 2000.8 경기도지사가 지휘보고를 통해 ①2차 공장총량 추가 배정(약 39만평) ②공장총량 확보조건부 공장 설립승인제도의 시행유보를 건의

□ 調整結果

- 공장총량 확보조건으로 공장설립을 승인하도록 두 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은 총량규제에 따른 민원과 기업의 투자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보완제도이므로 계속 추진

衛星位置情報補正시스템(DGPS) 共同活用 推進

□ 推進背景

- 해양수산부가 해상용으로 구축, 2000.10월부터 활용예정인 DGPS가 교통·조사·과학 등 타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국가차원의 시스템 관리·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시설활용도 제고 및 중복투자방지

□ 爭點事項

- 해양(선박) 이외의 타분야는 정밀도가 낮은 위성위치정보 시스템(GPS)을 이용하는 단계에 있으므로, 보다 정밀한 위치 정보를 원하는 공공기관·민간 등 DGPS이용 희망자가 무료 이용 및 활용토록 하는 조치 필요

□ 調整經過

- 2000.5.19 국무조정실 주관, 행정자치부 등 12개부처 담당관 참석하에 DGPS 공동활용방안 검토회의 개최
 - * 해양수산부의 DGPS 공동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참석기관이 대체로 동의하므로, 각부처간 실무협의를 거쳐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추진키로 함.

□ 調整結果

- 관계부처 협의 : 2000.8.10~9.5
- 총리훈령(안) 작성 : 2000.9.6~9.28
- 법제처 심의 : 2000.9.29제출
- 2000년중 훈령안 제정, 2001년부터 시행

논 農業直拂制 導入 推進

□ 推進背景

- WTO 체제에서는 추곡수매제 등과 같은 가격 지지정책은 제약을 받게되므로,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직불제의 도입을 추진
 - * 직접지불제도는 정부 재정에서 개별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정책으로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임.

□ 爭點事項

- 쌀자금을 위해 MMA를 제외한 쌀 자급기반유지 수준으로 즉시 제도를 도입하여,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병행 추진 필요(농림부)
- 직불제 도입은 농업생산기반 투자의 축소를 초래하여 쌀재배 목표면적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므로, 도입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(기획예산처)

□ 調整經過

- '99.12월 논농업직불제 기획단을 구성하고 2000.6~9월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마련
 - 공동단장 :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, 농림부 차관보
 - 위원 : 기획예산처·농림부·국무조정실 관계국장, 연구소(2), 학계(2)

□ 調整結果

- 2001년부터 전체 논을 대상으로 실시하되, 진흥지역과 비진흥 지역을 차등하여 지원
- 지급대상자는 실제 영농하고 있는자 (부재지주 제외)로 하며,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친환경적인 영농 실천의무를 부여
- 농업 투·융자 재원중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직불제 재원으로 활용

□ 社會文化調整官室 □

社會福祉公務員 手當支給 調整

□ 調整背景

- 인원부족과 타업무 지원등 격무로 인해 저하된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부터 월3만원씩 수당지급 추진
- 수당지급에 필요한 국고 15억원은 기확보

□ 異見內容

- 행자부는 수당을 활동비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방안 주장
- 기획예산처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하는 방안 주장

□ 調整結果(2001.8.10, 국무조정실장주재 관계차관회의)

- 사회복지공무원의 수당은 「지방공무원 수당규정」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수당을 활동비로 전환하여 지급
- 「지방공무원수당」의 개정은 지자체의 구조조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02년 하반기 중에 추진완료

亞·太 障礙人競技大會支援法施行令 制定關聯

□ 調整背景

- 부산 아·태 장애인대회 지주이용광고 허용여부 결정

□ 異見內容

<보건복지부 입장>

- 아시안게임지원법(95년 12월 제정)에는 지주이용광고가 허용되어 136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아·태 장애인법에는 허용이 일체 금지된다면 법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됨
-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체확보 재원 78억원중 상당 규모를 차지하는 27.5억원의 재원마련과 대회홍보를 위해 「지주이용광고」는 반드시 필요(32개 설치, 2001.4~2003.6)
 - * 인력(총2002년 117명 소요) 총원은 2001.4월 현재 44명이 필요하나 현재 17명이 근무중

< 행정자치부 입장>

- 지주이용광고물(20m×10m×20m)이 수도권일대 고속도로변에 난립되어 국토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의해 추가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
 - 또한 지주이용광고는 설치·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반영구적으로 광고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음
 - 아시안게임지원법 제정이후인 96년부터 허용금지 원칙을 유지
- 당초 부처협의 과정에서 행자부는 옥상광고, 차량탑재 영상광고는 합의하였으나, 복지부가 합의되지 않은 지주이용광고를 법안에 추가하여 차관회의에 상정한 것은 입법절차상 문제가 있음

□ 調整結果(2001.5.10, 국무조정실장주재 관계차관회의)

- 당초 32개 설치계획이었던 지주이용광고를 20개로 축소하여 설치하기로 결정

露宿者施設에 대한 支援을 위한 制度化 方案

□ 調整背景

- 노숙자는 지난 6월말기준 5,358명이며, 전국 152개 쉼터에서 숙식과 자활을 지원
 - 2000.10월 이후 여전히 5,000~6,000명을 유지하는등 장기화 조짐을 보임
- 그동안 노숙자쉼터가 법적근거없이 응급시설로 운영됨에 따라
 - 체계성·전문성·안정성이 미흡하고 노숙자의 자활 자립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
- 노숙자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의시설인 노숙자쉼터 시설 운영자들의 체계적인 사업지원요구와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

□ 異見內容

- 제도화에 따른 예산부담 증가 문제
- 현행제도 체계내에서의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등

□ 調整結果(2001.8.10, 국무조정실장주재 관계차관회의)

- 노숙자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방안 검토
 - * 현재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용역중이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 보완

어린이 保護・育成 綜合對策 樹立

□ 調整背景

- 어린이 보호·육성정책의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, 이를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·개선하여
 -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며 씩씩하고 명랑하게 지라날 수 있도록 함

□ 推進狀況

- 어린이 보호·육성 관련 관계부처 회의개최(2001.4)
 - 국무조정실 복지노동심의관(주재), 복지부, 문광부, 교육부 등 관계부처 과장 참석
- 「어린이 보호·육성대책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」 차관회의 보고 (2001.4)
- 「어린이 보호·육성 종합대책」 국무회의 보고 (2001.5)

□ 調整結果

- 국무회의에 보고한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에서 구체화작업 추진
 -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가계전문가로 Task-force를 구성하여 범정부차원의 「어린이 보호·육성 5개년 종합계획」을 수립·시행 등

食品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中改正(案) 關聯

□ 調整背景

- 단체급식분야에 HACCP(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)을 적용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, HACCP 지정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, 수출 또는 적용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.

□ 異見內容

- 쟁 점
 - 개정고시(안)에서 적용대상으로 추가되는 집단급식소에서 학교급식 시설의 제외 여부
- 관계부처 : 식약청 · 교육부

< 교육부 의견 >

- 학교급식업소(학교장이 지정한 집단급식소)에 대한 위생관리는 「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법률」에 의거 교육부에 위임된 사항임
-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자율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임
 - ※ '99년 정책연구사업 실시, 2000년 시범사업 운영 중, 자율기준은 HACCP의 원리를 적용
- 식약청의 고시예정안중 시설기준 등이 학교수준보다 높아 적용 곤란

< 식약청 의견 >

- HACCP 고시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위탁급식업체, 학교급식업체의 경우 정부가 강제로 HACCP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시설투자 등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와 정부신뢰성 문제야기
-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HACCP 기준의 설정은 식약청의 고유업무이자 책임사항임
- HACCP기준은 그 수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가 권고하는 수준이어야 함.
- 불완전한 HACCP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상실시 모든 식품에 대한 HACCP 추진사업에 막대한 영향 초래

□ 調整結果(2000.10.13, 사회문화조정관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)

- 식약청에서 단체급식의 HACCP기준과 관련하여 Codex에서 정한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(식품심의위원회 통과)하였으므로 이에 일탈하는 별도의 HACCP기준 인정은 불가
- 학교급식 위생관리 사업은 「학교급식자율관리기준」 등을 만들어 학교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킨 후 HACCP적용 검토
- 개인·기업 등에서 HACCP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 - 검토시 국가간 상호주의 등을 감안하여 신중대처 필요

3D·IT 業種 人力不足 解消 關聯

□ 調整背景

- IT 및 3D업종의 인력부족 현상 지속
 - 향후 5년동안 IT관련 전문인력 14만명 부족(정보통신정책연구원)
 - '00년 상반기 생산현장 인력이 53천명 부족('00.4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결과)

□ 調整經過

- '01.4 국무조정실장 주재 노동관계 차관회의 개최
 - 참석 : 법무부·행자부·교육부·산자부·정통부·복지부·노동부 차관, 중소기업청장, 국정홍보처장, 청와대 노동비서관
 - 안건 : IT인력 수급전망 및 대책, IT분야 직업훈련 추진현황 및 과제, 3D업종 인력부족 해소방안 등

□ 調整結果

- IT분야
 - 금년중 11만명의 IT인력 양성(노동부 6만명, 정통부 5만명)
 - 대학 등에 IT 관련 학과 정원 확대('01년중 12천명 확대)
 - 정보기능대학 신설 및 훈련프로그램 20종 개발 등
- 3D분야
 -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현장활동(중환) 프로그램 실시
 -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채용박람회 개최
 - 실업자가 3D업종에 취직할 경우 「조기재취직수당」 우대지급 (실업급여 잔여액의 1/2 → 전액)
 - 중소기업의 3D 공정 작업 개선 추진 등

「人的資源開發會議 規定(案)」協議 調整

□ 調整背景

- 대통령께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관련부처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교육문화장관회의를 신설·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지시('00.1.27 기획예산처장관보고서)
 - 이와관련 인적자원관련 제반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키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신설 추진

□ 異見內容

- 「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(안)」에 대해 부처간 의견이 상충
 - 설치목적, 기능, 위원회 구성 등

□ 調整結果(2000.2.19, 국무조정실장주재 관계차관회의)

- 설치목적 : 교육·문화·과학기술 등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조정
- 기 능
 - 교육·문화·과학기술 등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
 - 기타 교육·문화·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간 협의를 요하는 현안사항
- 교육부장관 등 9명 및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 등으로 수시위원회 구성

□ 調整效果

-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제반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조기 설립에 기여

「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」 등 改正關聯

□ 調整背景

- 교육세 개편과 관련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및 「시·군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 개정과 관련 이견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실에 조정을 요청('00.10)

□ 異見內容

-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기준인 시·도 세규모에서 지방 교육세 제외여부
- 목적세의 교특회계 전출대상에 포함여부
- 봉급교원 봉급전출시 재원산출 경우 봉급조정수당 및 기말수당(200%) 본봉 포함여부
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사업 범위에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추가여부
- 보조사업에 대한 시·도의 승인규정의 적정성 여부

□ 調整結果(2001.7.13, 사회문화조정관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)

<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관련 >

- 시·도세 규모산정시 주행세중 운수업계 보조금은 운수업계 보조금협의회 국가보조금 전환 및 세율인상 등 검토
-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산정은 시·도세 총액에서 목적세를 제외
- 봉급조정수당 및 기말수당도 봉급전출금에 포함

<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>

- 보조사업 범위에 정보화사업 포함
- 하위규정인 보조사업 승인제한조항 존치

□ 調整效果

- 정부와 지자체간 교육비관련 분담의 명확화를 통하여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의 조기 법제화에 기여

中學校 無償義務教育 擴大에 따른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改正關聯

□ 調整背景

-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국적 확대 추진사업에 대한 이견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실에 조정 요청('01.10)

□ 異見內容

- 의무교육 확대지역 인건비의 경상교부금 부담을 2005.1.1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계속 부담해야 할 것인지 여부 등 이견

□ 調整結果(2001.7.13, 사회문화조정관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)

-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되는 2004년까지는 국가가 수업료· 입학금· 교과서대금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현행 교원봉급 체제를 계속 유지
- 2005.1.1이후의 부담방안은 2004년도에 국가재정형편, 의무교육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협의 하기로 함

□ 調整效果

-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교육비 부담의 명확화를 통하여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조기입법화에 기여

在外國民 特別銓衡 관련

□ 調整背景

- 2002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결원이 발생해도 추가합격·등록을 금지한 것과 관련, 외교통상부 등에서 대외국민특별전형의 경우 수시모집 추가등록 허용 등을 요청('01.5)
 - 등록후 미등록 인원에 대하여 별도전형 없이 충원할 수 있도록 요청
 - 서울대, 연대, 고대 등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전형일정 분산 요구
 - 상위권 대학들이 미등록 결원발생시에 정시모집 실시로 충원 희망

□ 異見內容

- 2002학년도 대학입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미등록 결원 발생시 추가모집 허용 여부
- 주요대학의 전형일정 분산 요구

□ 調整結果(2001.6.23, 사회문화조정관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)

-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금지 규정은 시행도 않고 개정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신뢰문제가 있어 곤란
-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금지로 인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생의 모집정원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가 적극 노력하기로 함
 - 수시모집 미등록결원에 대해서는 정시모집을 실시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에 적극 권장토록 함

國語의 로마字表記法 改正 관련

□ 調整背景

- 반달표, 어깨점 등 특수부호의 사용과 자음의 유·무성음 구별로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종래의 로마자표기법을 개정하여 2000.7.7부터 시행
- 이에 새 로마자표기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조 필요

□ 部處別 推進事項

- 외 교 부 : 여권발급시 새 표기법 적용, 외국의 우리나라 대사관에 전파 홍보
- 국 방 부 : 군사작전 지도의 지명표기 새 표기법 적용
- 행 자 부 : 옥외광고물, 건물·도로명에 새 표기법 적용
- 교 육 부 :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에 새 표기법 반영
- 건 교 부 : 도로표지판 새 표기법 적용
- 문화재청 : 문화재 설명 및 안내표지 등에 새 표기법 적용

□ 調整結果(2000.7.27 교육문화심의관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)

- 부처별로 새 로마자 표기법의 시행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함
- 도로표지판, 광고판교체 등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선결과제임. 부처별 예산사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공항·고궁 등 외국인출입이 많은 곳이나 주요관광지 등은 우선 교체

□ 調整效果

- 인터넷환경에 부합, 일반국민의 이해 용이

「慶州 世界文化엑스포2000」支援관련

□ 調整背景

- 「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00」(9.1~11.10, 61개국 참가, 355억원 소요)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필요

□ 部處別 推進黨項

- 외교부 : ASEM회의 참가 회원국 원수·각료 등의 문화엑스포 방문유도 해외주재공관, 주한외국공관, 영사관 등을 통한 해외홍보
- 법무부 : 문화엑스포 참여 해외참가단, 전시유물 등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
- 행자부 : 각 시·도 전시관 참여 및 시·도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 유도
- 교육부 : 각급 학교에 수학여행단, 소풍단, 학습체험장 활용 등 협조
- 과기부 : 주제영상(VR), 컴퓨터게임관, 사이버캐릭터쇼 등 기술과 예산지원 협조
- 건교부 : 행사기간중 서울~경주간 특별열차 운영, 항공편 증설, 국제노선 심야전세기 운항
- 관세청 : 외국전시물, 문화상품 등 통관절차 간소화, 행사장 인근에 외국인 면세점 설치 확대

□ 調整結果(2000.8.14, 사회문화조정관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)

- 부처별 추진실적 미비점 보완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·추진 지시
- 출입국문제 및 해외홍보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조치 강구 지시
- 수학여행, 소풍단, 학습체험장 활용 협조공문 발송

□ 調整效果

- 「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00」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

健全海外旅行 推進對策 관련

□ 調整背景

- 유가급등, 환율상승 등 대외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국내인의 해외여행은 IMF 외환위기 이전상황으로 증가
- 하절기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객의 고가휴대품 반입증가 및 골프·쇼핑관광 등 호화·사치관광의 증가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

□ 部處別 推進事項

- 문화부 : 언론·방송을 통한 건전해외여행 자제분위기 조성, 여행업체 지도·점검,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건전 여행문화 조성
- 법무부 : 출입국심사 강화
- 행자부 :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
- 교육부 : 교(직)원·학생의 해외연수 자제 유도
- 국세청 : 호화·사치생활자 조사 및 관리강화
- 관세청 : 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 및 사치성 물품 반입 억제

□ 調整結果(2000.6.8, 교육문화심의관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)

- 여행업체 지도·점검 실시(9월)
-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(7.10~9.30)
- 2000상반기중 음성·탈루소득자 조사 실시(1,959명 조사, 1조 1,785억원 추정)

□ 調整效果

-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건전해외여행 유도

□ 水質改善企劃團 □

금강·영산강 수계 물管理綜合對策 樹立

□ 調整背景

- '99. 9. 8 금강·영산강수계 물문제 해결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물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금강·영산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추진
- 대책안에 대한 부처관계 및 자치단체의 이견사항에 관해 조정 (2000. 10. 6)

□ 異見內容

< 재원대책 >

- 총 소요재원의 규모추정과 조달방안은 추후 관계부처간 별도의 협의를 거쳐 확정 필요(기획예산처)
- 양여금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방양여금 배분비율 확대는 곤란(행정자치부)

< 조직정비 >

- 지도·단속권이 일원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감시대의 정규조직화는 의미가 없음(행정자치부)

<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 >

- 특별대책지역밖 상류의 금강본류는 수변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(충북도)
- 동북댐 수변구역 지정시 동북천 외의 유입하천인 야사천, 구산천, 길성천, 다곡천을 수변구역 지정대상에 포함(광주광역시)
- 수변구역내 신규 입지금지의 예외조항 신설(건설교통부) 및 신고시설 이하규모의 축사 신축 허용(전남도)
- 수원함양보안림 지정범위를 5km에서 1km로 축소 조정

<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주민지원 >

- 물이용부담금 시행시기를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되는 2001년 이후로 하고 부담금 요율을 50~60원으로 하향 조정(대전광역시)
-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규제지역의 집수구역까지 확대(전남도)

□ 調整結果(2000.10.24,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)

- 소요재원 규모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다음주내로 확정하고, 재원조달 방안은 계속 협의
- 환경감시대 파견인력은 우선 별도 정원화하고, 정규조직화는 추후 추진
- 수변구역은 본류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지정하고, 지천은 주민이 원할 경우에만 지정
- 보안림 지정범위는 하천 양안 5km 이내로 조정
- 용담댐 용수배분계획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, 대상지역 등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논의·결정

□ 調整效果

- 2000. 10. 24 물관리정책조정회의에서 금강·영산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확정, 관계부처 시달
- ⇒ 금강·영산강수계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

수원 함양 保安林 指定

□ 調整背景

-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남·북한강본류 및 경안천유역 국·공유림중 수질보전에 필요한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 추진
- 한강수계 보안림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이견사항에 대하여 조정(2000. 7. 20)

□ 異見內容

- 보안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보안림 추가지정(환경부)
- 지자체와 협의 없이는 추가지정 추진 곤란(산림청)
- 개발계획, 지역정서 등으로 공유림의 보안림 추가지정 곤란(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)

□ 調整結果(2000.7.20, 부단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)

- 보안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대부림중 실제 대부되지 않은 면적과 보전임지는 보완조사를 거쳐 보안림으로 추가 지정기로 조정
- 조정한대로 보완조사를 거쳐 보안림 지정대상지가 52천ha→131천ha로 증가(2000. 12, 보안림 지정고시)

□ 調整效果

- 보안림 지역은 각종 행위가 제한(임목죽의 벌채, 임산물의 굴취·채취,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)되어 2천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항구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

영월댐 建設 關聯 推進與否 調整

□ 推進背景

- '90.9월 한강 대홍수로 상·하류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강수계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'90.10.16 대통령 방침으로 결정하고,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
- 타당성조사, 주민설명회,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'97.9월 영월댐 건설예정지 지정 고시

□ 異見內容

- 환경단체의 입장
 - 댐건설 예정지역이 석회암 지대로 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, 동 지역이 천연기념물 및 희귀종 식물이 다수 자생하고 있고, 또한 백년동굴 등 문화적 유산이 산재해 있는 등 천혜의 비경을 지니고 있어 댐 건설로 인해 동강의 아름다움이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주장
- 건설교통부 등 사업시행 주체
 - 물 수요관리를 하여도 절대량이 부족하고, 물 절약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관리와 병행하여 댐 건설이 필요
 -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생태계 파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,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댐 상류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함

□ 共同調査 實施

- 영월댐 건설에 따른 찬반 논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른 물 관리정책민간위원회 건의('99.6.1) 등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객관적 재조사를 추진
- 환경단체와 정부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「영월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」 발족('99.8.26)
- 조사단은 8개월간의 자율적인 조사를 완료하고, '00.5.19 조사 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제출

< 보고서 내용 >

- 동강유역은 구석기유적·백룡동굴 등 소중한 문화유산과 그 어느지역보다 생물종의 다양성이 풍부하고, 독특한 석회암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보존가치가 탁월하므로,

물 부족과 홍수조절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월 다목적댐 건설은 중단됨이 바람직함

□ 調整結果

- 정부는 민간공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『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』를 개최하여 영월댐 건설 추진 백지화 결정('00.6.13)

□ 調整效果

- 영월댐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찬·반 양자간의 대립과 논쟁 종식, 민간공동조사로 국민여론의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

糞尿・畜産廢水 海洋排出基準 設定關聯

□ 調整背景

- 폐기물 배출해역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"분뇨·축산폐수의 배출기준" 설정에 대한 관계부처간 입장차이 노정

□ 異見內容

- 해양수산부
 - 분뇨·축산폐수에 대한 배출기준을 BOD, 수분함량으로 설정한 기준(안)이 농림부·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, 분뇨·축산폐수에 대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6(해양배출처리 기준)의 적용 추진
- 농림부
 - 중금속은 사료의 필수성분이므로 중금속 기준의 즉시 적용은 곤란, 현행대로 배출기준 없이 해양배출 허용 요구
- 환경부
 - 분뇨·축산폐수의 중금속 정밀조사 후 결정

□ 調整結果(2000.8.4, 기획총괄부장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)

- 분뇨·축산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처리기준(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6)의 즉시 적용을 유보하고
- 해양배출에 관한 국제적 지침이 될 「'96의정서」 발효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해양배출기준을 제정·적용키로 하고, 농림부에서는 새로운 기준적용에 대비한 사전준비 철저 이행

□ 調整效果

- 관련부처간 이견해소 및 해양배출기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
- 해양수질 및 환경의 중요성 인식 계기마련

水質改善을 위한 地方讓與金 財源調達 方案

□ 調整背景

- 한강·낙동강 등 4대강 수질개선대책을 위한 지방양여금 투자 소요는 9조 2,500억원이나 현행 지방양여금법 배분기준으로 조달가능액은 5조 7,400억원에 불과
- 따라서 「'98 한강수계수질관리특별대책」을 반영한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결과 부처간 이견으로 법개정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 필요

※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('98.11) 주요내용

- 지방양여금 수질오염방지사업 배분비율 연차별 확대 :
24.5%('00)→26.5%('01)→28.5%('02)→30%('03)
- 농특세의 지방양여금전입비율 상향조정 :
19/150('00)→23/150('01)

□ 異見內容

- 농 립 부 : 농특세의 지방양여금 전입비율 상향조정은 2002년부터 적용
- 건설교통부 : 수질부문의 지방양여금 배분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부문의 지방양여금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반대
- 행정자치부 : 지방양여금 사업대상에 광역시 區道추가는 반드시 필요
- 기획예산처 : 지방양여금 지원 도로사업 대상에 광역시 區道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

□ 調整結果

- 「'98한강수계 수질관리대책」에서 관계부처간 합의한 내용대로 수질과 도로부문 배분비율을 반영하여 2002. 1. 1 시행
 - 수질 : 주세 40.0%→46.6%(+6.6%)
 - 도로 : 주세 14.7%→ 8.1%(△6.6%)

- 농특세의 지방양여금전입비율 상향은 2002년부터 적용
- 도로사업 대상에 광역시 區道의 추가는 추후 별도협의

□ 調整效果

- 수질부문 재원대책을 반영한 법개정 조속 추진
 - ※ 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(2001.6.5), 국회 제출(6.9)

- 4대강 수질개선 지방양여금 부족재원 확보 가능
 - ※ 2002~2005 기간중 지방양여금 재원 9,629억원 추가조달 가능

새만금事業 政府措置計劃 確定

□ 調整背景

- 전라북도 군산시, 김제시, 부안군 일원에 농지 및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부가 시행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환경영향, 수질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사업추진을 반대하고
- 정부에서도 사업주무부서인 농림부와 관련 부서인 환경부, 해양수산부간에 이견이 있어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2001. 5. 25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의 의결을 거쳐 조정

□ 異見內容

<환경부>

- 만경수역의 수질예측모델링결과 총인(0.103ppm)의 수치는 수량가중연평균 수치로써 갈수기 일부구역의 오염농도는 이 보다 더 악화될 수 있음

<해양수산부>

- 새만금 갯벌(총 20,800ha)은 해양수산 자원의 산란 및 서식에 알맞는 하구갯벌로서 경제적,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조류가 도래하는 서식지이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규명작업을 추진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새만금사업 시행 유보

□ 調整結果(2001.5.25, 물 관리정책조정위원회)

- 방조제는 완공하되, 동진수역부터 먼저 개발하고, 만경수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 유보

□ 調整效果

-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목적을 계획대로 달성
 - 우량농지확보(28,300ha), 담수호조성(11,800ha), 배후농경지 상습 침수피해문제 해소, 교통·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 등
- 국가주요 정책추진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정부의 대국민 신뢰 제고

□ 安全管理改善企劃團 □

開發計劃 樹立時 「防災概念」 導入 制度化

□ 調整背景

- 2000년 수해시 용인시 등 신도시의 수해가 무분별한 개발사업 등에 기인한다는 지적 제기
-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부터 수해·지진 등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「방재」시스템 도입 시행 필요
- ⇒ 2000.7.24, 국무총리 지시 :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방재개념 도입제도화를 추진토록 할 것

□ 調整經緯

-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에 방재개념의 구체화 및 규정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
 - 2000.7.28 총괄조정관 주재 행자부·건교부·환경부 및 한국토지공사 관계관 회의 개최
 - 2000.8. 1 자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 개최
- 2000.8.11 개발계획 수립시 실효성 있는 「방재」개념 도입을 위한 종합개선대책 수립·시달(국무조정실)

□ 調整改善 主要內容

- 도시계획 입안시 실효성 있는 「방재계획」 수립(건교부)
 - 도시계획 입안시는 물론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도 방재계획 수립 의무화
 - 저지대 및 지내력(地耐力)이 적은 지역에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
 - 저지대 및 수해상습지는 가급적 운동장, 공원 등 공공용지로 확보하여 수해시 재산피해 예방

- 주변환경에 맞는 「방재시설」이 설치되도록 방재시설 다양화
 - * 유수지, 저수지, 저류시설 등
- 「중앙재해영향평가」 대상규모를 「환경영향평가」대상 수준으로 확대(환경부·행자부·건교부)
 - 재해영향평가(180만㎡), 환경영향평가(30만㎡) ⇒ 30만㎡
 - 재해영향평가대상 사업 종류 확대(건교부)
 - * 6개분야 16개사업 → 6개분야 24개사업
- 중앙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「지방재해영향평가」 도입(행자부)
 - 자치단체의 방재사전심의대상 개발사업을 30만~15만㎡ 규모로 하되, 수도권 준도시지역의 아파트 건설사업은 10만㎡이상으로 규정
 - 재해영향평가 및 방재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도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방재사전심의제도를 도입토록 자치단체 조례준칙(안) 마련·시달
- 각종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심의위원회 등에 방재전문가 참여(건교부)

□ 措置事項

-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(건교부, 2000.8.18)
-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(건교부, 2000.8.30)
- 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(건교부, 2000.9.1 시행)
- 환경·교통·재해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(환경부, 2000.12.30)
- 자치단체 조례준칙(안) 제정·시달(행자부, '01.2.5)

新空港高速道路 運行 市内버스 立席運行 禁止

□ 調整背景

-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시내버스가 입석승객을 태우고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시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고
- 국제 공항으로서 대외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있음
- ※ 인천공항 버스운행 현황
서울 및 수도권 35개노선 427대, 전주등 지방 8개노선 50대
- ※ 신공항고속도로 일일 출퇴근 인원 : 21,000명

□ 調整經過

- 2001. 3. 15, 기획단 부단장 주재, 건설교통부, 경찰청,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시, 고양시 과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협의

□ 調整結果

- 신공항고속도로 운행 노선버스는 출퇴근시 증차 등을 유도하여 「좌석승객」만으로 운행토록 함
- 경찰, 행정기관 합동으로 불법운행 강력 단속 실시

二輪自動車 前照燈 自動燈火制度 導入

□ 調整背景

- 주간에도 이륜자동차의 접근이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잘보이도록 하여 교통사고 감소 유도
 - 사고 방지를 위해 2륜자동차의 시동을 켜면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개선필요
- ※ 이륜차 사고 발생 : '98 - 9,917건, '99 - 10,085건, 2000 - 10,419건

□ 爭點事項

- 이륜자동차 점등 기준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경찰청에서 먼저 검토해야할 사항이며,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사항이 아님(건교부)
(*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은 WTO 사무국에 사전 통보 대상임)
- 도로교통법상 주간에 전조등을 켜도 위반사항이 아님(경찰청)

□ 調整經過

- 2000. 9. 4 「안전관리 종합대책」추진과제로 지정
⇒ 자동차 안전기준에 이륜차 전조등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조정
- 2001. 3. 19 WTO에 이륜차 전조등 관련 변경사항 통보
- 2001. 4. 3 기획단 부단장 주재, 건교부·경찰청에서 조치할 사항을 조속 추진토록함

□ 調整結果 : 이륜차 전조등 자동등화제도 도입

- 2001. 4. 28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(전조등) 개정
- 이륜자동차 배터리·등기구·배선·스위치 등 개발후 2003. 1 시행 예정

高速道路 運行 市内버스 座席安全띠 設置 義務化

□ 調整背景

-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 및 승객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토록 되어 있으나
- 안전띠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내버스가 수도권 주변도시에서 고속도로를 경유, 통행할 수 있도록 노선허가를 받아 고속도로 운행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곤란

□ 爭點事項 : 건설교통부, 경찰청

○ 경찰청 의견

-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차량은 제작때부터 좌석안전띠가 장착되어 있지 않고, 일부 시외버스는 좌석안전띠 관리 소홀로 안전벨트가 아예 없거나 땔 수 없는 경우가 많음
- 시내버스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시내노선버스에는 좌석안전띠 장치를 장착토록 법제화하고, 좌석안전띠 장착·관리상태에 대한 감독 강화

○ 건설교통부 의견

-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시내버스의 경우 안전띠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고,
- 최근 경영난에 빠진 버스업체에게 좌석 안전띠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버스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함

□ 調整經過

○ 2001. 3. 2

- 기획단 부단장 주재, 관계부처·자치단체 회의개최, 건설교통부, 경찰청,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수원시, 성남시, 용인시, 광주군 관계자 참여 협의, 추후 조정기로 함

⇒ 고속도로 운행 시내버스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

○ 2001. 5. 8

- 건설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 의견대로 추진기로 함

□ 調整結果

-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중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에 대하여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토록 함
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에 대한 좌석안전띠 설치 실태 일제점검 및 검사 철저

救難・救助 人力擴充을 위한 義務消防隊 設置

□ 調整背景

- 전체 소방공무원의 80%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력부족
- 급증하는 인위재난에 대응, 병역법상 현역자원으로 의무소방대 신설

□ 爭點事項

- 병역의무자를 군사작전과 관련없는 업무에 복무토록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병역특례 확대는 국민적 정서에 배치(국방부)
- 의무소방대 설치는 현장대응 부족인력의 충원효과 및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 안전문화 확산 역할(행자부)

※ 「의무소방대법」제정 및 병역법 제25조 개정 사항

□ 調整經過

- 2000. 9. 4 국무조정실, 「안전관리 종합대책」추진과제로 지정
- 2001. 3. 12 당정 합의(소방공무원 처우개선대책)
- 2001. 7. 18 의무소방대법 설치법 및 병역법 개정법률 국회 통과

□ 調整結果 : 의무소방대 설치

- 의무소방원을 모집하여 군사·소방훈련 이수후 일선 소방관서 배치
- 모집(행자부) → 군사훈련(국방부) → 소방교육(소방학교) → 배치운영(소방관서)
- 2001. 9~11월 모집공고후 2002. 3~4월 교육훈련 및 현장배치 예정

88고속도로 交通事故 減少對策

□ 調整背景

- 2002 월드컵을 계기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
- 88고속도로의 경우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
 - * 6월말 현재, 전국의 경우 전년대비 25% 감소(1263명)하였으나, 88고속도로의 경우는 72% 증가(18명→31명)

□ 爭點事項

-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에 따른 사망사고임에 따라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중앙분리대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나
-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한 도로폭 추가확보 문제 등 2차선 고속도로의 여건상 중앙분리대 설치 곤란

□ 調整經過

- 88고속도로 주요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장 합동조사(2001.7.12 ~ 7.14)
 - 국무총리실, 건설교통부, 경찰청, 한국도로공사,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의 전문요원으로 합동조사반 편성
- 관련기관 88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회의개최(2회 : 2001.7.24 / 7.27)

□ 調整結果

- 도로폭원의 여유가 있는 구간은 중앙분리시설을 설치하고, 여유가 없는 구간은 안전시설 보강 및 제한속도 조정 추진
- 고속도로의 근원적인 문제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 조기 추진
 - * 2001. 7. 3, 88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수립 통보

自動車 運行記録計 등 事後管理制度化

□ 調整背景

- 운행기록계 및 속도제한장치에 대한 모범인 자동차관리법령(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)은 설치의무만 규정하고 사후관리 및 처벌관련 규정의 미비로 형식적인 운영상태
- 최근 진주관광버스 추락사고(사망21명)등 대형교통사고를 계기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언론, 시민단체, 국회, 감사원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됨

□ 爭點事項

- 운행기록계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법
 - 건설교통부
 - 과속단속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하여 운행기록계 등의 사용 및 기록지 1년간 보관의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하여야 함
 - 경찰청
 - 운행기록계 등의 설치의무 주요대상인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교부 소관 “자동차관리법” 등에 규정하여야 함

□ 調整經過

- 관계기관 조정회의
 - 일시/장소 : 2001. 7. 30(월), 8. 2(목)/기획단 회의실
 - 참석자 : 기획단 부단장(주재), 규제개혁조정관실, 법제처, 건설교통부, 경찰청

□ 調整結果

- 운행기록계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역할을 세분하여 부처별로
관련사항에 대한 법개정 등을 조속 추진토록 조정
 - 자동차관리법 : 운행기록계 부착의무화
 - 여객·화물 등 운수사업법 : 운수업자의 정상적 작동(관리) 의무화
 - 도로교통법 : 운전자 준수사항 의무화
 - 교통안전법 : 교통안전진단제도관련 기록지 제출의무화,
보존기간 설정

- 대형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 실시

봄철 산불 防止對策 推進

□ 調整背景

- 매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, 추진하고 있으나 건조기 동시 다발화 및 대형화 산불 계속 발생 추세
 - ※ 봄철 산불 발생 : 연간 건수의 82%, 면적 98%점유
- 산불조심기간 설정(2. 1~5. 15) 및 범정부적 공조대응체제 구축 필요

□ 爭點事項

- 범정부적 공조대응체제 구축 문제
 - 산불 주무부처인 농림부(산림청) 이외에 유관부처 적극 대응 필요
 - ※ 논·밭두렁 소각 관리, 실화자 처벌, 부대지역 산불예방, 헬기 공조, 홍보 등

□ 調整經過

- 2001. 2. 23 기획단 부단장 주재 10개부처 회의개최, 공조체제 구축
- 2001. 3. 23 산불관련기관 조정회의 정례화(3~5월중 매주 금요일)
- 2001. 3. 27 봄철 산불 방지대책 국무회의 보고(농림부)
- 2001. 3. 28 동해안 산불방지 현장특별대책본부 설치 운영
- 2001. 4. 4 「안전점검의 날」에 산불예방·계도 단속 실시
- 2001. 4. 20 석탄일, 어린이날 산불대비 총력 추진대책 협의

□ 調整結果

- 정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적극 참여로 산불 총력 대처
 - 2000년 대비 발생건수 3% 증가, 면적은 97% 감소
 - 건당진화시간 3시간 21분 ⇒ 1시간 49분(△ 46%)
 - 건당평균피해 40.6 ha ⇒ 1.4 ha(△ 97%)

街路燈 感電事故 對策 樹立

□ 調整背景

- 2001.7.14~7.15기간중 서울·인천·경기·강원지역에 집중호우로
 - * 서울 310.1mm(최대 시우량 99.5), 인천 220mm, 동두천 175mm
 - 가로등(일부는 신호등·입간판)에 의한 감전사고 사망자가 19명 발생
- ⇒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대책 수립·추진 필요

□ 調整經緯

- 2001. 7. 16,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부단장 주재, 관계부처·단체 대책회의 개최
 - 행자부·산자부·건교부·경찰청, 서울시, 한국전력, 전기안전공사

□ 調整結果

- 가로등 일제 안전점검(7.20~8.20)⇒누전차단기 설치, 노후시설 개수 등
- 가로등 설치시 한전에서 사용전 점검강화(안전기준 미비시 전력 미공급 등)
- 전기설비 관련법규 개정→전기안전기준 강화
 - 전기안전 부적합시설에 대한 단전의뢰 권한을 현행의 시·도지사외에 전기안전공사에도 부여(전기사업법)
 - 「전기안정기」 설치위치를 1.5m이상 상향조정(전기설비기술기준)
 - * 「전기안정기」외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기준 검토(산자부·서울시 협의)
- 산자부·국정홍보처와 협의, 전기안전 홍보 강화

地震 防災對策 推進 強化

□ 調整背景

- 2001년 들어 엘살바도르(1.14, 규모 7.6), 인도(1.26, 규모 7.7) 등 전 세계적으로 지진 빈발
-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지진대책을 확인·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추진 필요성 제기

□ 調整經緯

- 2001. 2. 6,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부단장 주재, 관계부처·단체 대책회의 개최
 - 교육부, 국방부, 행자부, 과기부, 산자부, 정통부, 노동부, 건교부, 해수부, 기상청

□ 調整結果

- 내진설계 기준대상 시설물에 공동구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
- 내진설계기준 설정이전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소관별 조사 및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
- 도시계획·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「지진 대책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
- 지진 방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
- 지진 측량 노후장비 교체·보강 및 긴급 지진 예보시스템 구축
- 행정자치부, 건설교통부 내에 지진담당 명칭을 부여한 전담 조직 및 인력확충